

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



보건복지부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(2024.10.31.)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: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별표4 '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'

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**2.1명당 1명 이상**인 노인요양시설 (단위 : 원)

<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 수가 인상 안내>

등급	2024년 1일(본인부담금)	2025년 1일(본인부담금)	1일 인상액
1등급	16,848원	18,090	1,240원
2등급	15,630원	16,780	1,150원
3~5등급	14,760원	15,840	1,080원

<2025년 등급별 30일 기준 입소비 인상 안내>

등급 (1일수가)	본인부담금			입소비(식대+간식비 포함)			비고	
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국민건강보 험공단·장 기요양급여 인상	
1등급 (90,450)	542,700	325,620	217,080	932,700	715,620	607,080		
2등급 (83,910)	503,460	302,070	201,380	893,460	692,070	591,380		
3~5등급 (79,240)	475,440	285,260	190,170	865,440	675,260	580,170		
식비	3,800원(1식) × 3식 × 30일 = 342,000원						총 390,000	식비(1식) 300원인상 간식비(1일) 100원인상
간식	1,600원(1일) × 30일 = 48,000원							

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(6.69%) 조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☎032) 575-5007

2024년 12월 24일

미소인요양원장

